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0
------------	-----

발의년월일 : 1993. 3. 6

발 의 자 : 조례점비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의료원장과 감사는 상호견제기능의 관계여야 함에도 원장이 추천하고 다시 원장이 임면함은 견제기능이 상실되므로 회계사무가 맑은 공인회계사를 이사회에서 추천토록 함

□ 주요골자

감사를 공인회계사로 임면

□ 첨부

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중 “감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를
“감사는 공인회계사를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승인하
고 원장이 임면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